

서울고등법원

제 4 0 민 사 부

결 정

사건

2025라2350 가처분이의
2025라2351(병합) 가처분이의
2025라2352(공동소송참가) 가처분이의
2025라2353(공동소송참가) 가처분이의
2025라2354(공동소송참가) 가처분이의
2025카합7(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

채권자,상대방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원, 오새론, 이종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수, 김경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인석, 강진구, 김지훈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 상대방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원, 오새론, 이종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수, 김경수
공동소송참가인

유한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기성

채무자,항고인

1. E 주식회사

2. F

3. G

4. H

5. I

6. J

7. K

8. 호주국인 L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재근, 이승호, 최웅영, 주병창, 윤성제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현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31. 자 2025카합20404, 28(병합),

29, 30, 31(공동소송참가)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 중 채무자 E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과 채무자 I, K, 호주국인 L에 대한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와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

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결정 중 채무자 E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과 채무자 I, K, 호주국인 L에 대하여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3. 채무자 E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고 및 채무자 F, G, H, J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E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E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I, K, 호주국인 L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며,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F, G, H, J 사이의 항고비용은 채무자 F, G, H, J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공동소송참가취지,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취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와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55 사건에 관한 2025.

2. 13. 자 공동소송참가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채권자의 신청취지와 마찬가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2.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가처분신청을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채무자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채무자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 및 기록을 살펴보다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각하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부분(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인용 부분 포함. 다만, 제1심결정의 ‘3. 결론’ 부분 제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신청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들의 주장 요지

- 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제1-2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의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의안이 채무자 E의 2025. 3. 28.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의안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1-2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2)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채무자 I, K, 호주국인 L는 2025. 3. 12.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채무자 I, 호주국인 L가 다시 사외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므로, 채무자 I, K, 호주국인 L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 1)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등 참조).
- 2)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

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E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변경의 건’이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제2-1호 의안으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제2-2호 의안으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제2-3호 의안으로 재차 동일한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채무자 I, K, 호주국인 L가 2025. 3. 12. 사임하였고 2025. 3. 21.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 채무자 E의 2025.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채무자 I, 호주국인 L와 Y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25. 3. 31.부터 2025. 4. 3.까지 각 그 취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중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와 채무자 I, K, 호주국인 L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C는 채무자 E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결의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1031)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될 상황에 있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결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 단계에서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

참가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주장은 관련 가처분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 및 그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라2309)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재항고심(대법원 2025마6793) 계속 중이다],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C는 채무자 E의 이사회가 현재 사내이사 3명(M, N, O), 기타비상무이사 3명(P, Q, R), 사외이사 13명(S, T, U, V, W, X, Y, 채무자 F, G, H, I, J, 호주국인 L)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그중 사외이사 6명(채무자 F, G, H, I, J, 호주국인 L)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그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1명(N), 사외이사 4명(U, X, 채무자 I, 호주국인 L)을 선임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되는 경우 채무자 E에는 사내이사 2명(M, O), 기타비상무이사 3명(P, Q, R), 사외이사 5명(S, T, V, W, Y)만이 남게 되는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인 채무자 E은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상법 제542조의8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I, K, L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채무자 I, K, L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C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E의 정관 제28조 제1항은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결의의 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 E의 이사는 3인 이상이 되므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은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

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의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즉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이사의 선임이 다음 주주총회까지 유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 채무자 I, K, L의 사임으로 인하여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의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정한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 I, K, L에게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사외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E의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에서 1명이 미달하게 되는데, 채무자 E의 정관 제28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를 ‘선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하고 있고, U, X은 2023. 3. 17. 채무자 E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거나 중임되었으므로, 선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2024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인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인 2025. 3. 28.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더라도 채무자 I, K, L가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한 2025. 3. 12. 이후 U, X의 사외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상, U, X에게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사외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무자 I, K, L에게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사외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4) 다만,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제1-8호 의안과 동일한 의안으로 볼 수 없고, 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2025. 1. 21.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제1항을 반영하여 그 의안이 수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정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제2-4호 의안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제1-8호 의안에서 자구만 형식적으로 수정되었다거나 그 자체의 의미와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부분과 채무자 I, K, 호주국인 L에 대한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고쳐 쓰는 부분

○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 6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의 채무자 E 주식 보유현황 및 본안소송의 제기

1)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C는 2024. 12. 31. 기준 채무자 E의 주식 1,618,327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는 2025. 2. 4. 기준 채무자 E의 주식 2주를 보유한 주주이며,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유한회사 D는 2025. 3. 7. 설립 당시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받았고, 채권자는 그 무렵 채무자 E의 주식 10주를 별도로 취득하였다.

2)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2025. 1. 23.로부터 2개월 내인 2025. 2. 28.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085)를 제기하였고,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는 2025. 3. 21. 위 사건에 공동소송참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528)를 하였으며,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유한회사 D는 2025. 3. 24. 위 사건에 공동소송참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564)를 하였다.」

○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 11면 2행의 “반면 Pty Ltd의 경우,” 다음에 “주식을 정관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호주 회사법 section 1070A(1)<각주1>) 정관에서 주식 양도에 관한 광범위한 제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를 추가한다.

○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 11면 10~11행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Pty Ltd의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양도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불복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호주 회사법 section 1071F(2)<각주2>),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회 의사결정권인 양도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여(상법 제335조의2 제4항) 투자자본회수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식 양도 등록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Pty Ltd의 주식의 양도성이 상법상 주식회사에 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 11면 하1행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한다(호주 회사법 section 113).” 다음에 “구 상법 제545조(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본문은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유한회사의 소규모성·폐쇄성을 반영하여 유한회사의 사원총수를 제한하였던 것이다.”를 추가한다.

○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 13면 10행부터 15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제1-4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

채권자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당시 위 의안들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명하였던 사실은 소명된다(소을 제48호증 7면). 그러나 채권자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의안들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소갑 제26호증 13면),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아 채권자가 위 의안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위 의안들이 부결되었을 것이 계산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2) 채무자 F, G, H, J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부분

위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아 채권자가 위 의안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위 의안들이 부결되었을 것이 계산상 명백한 점, 위 채무자들이 채무자 E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따라 채무자 E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제1-4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부분과 채무자 F, G, H, J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부분에 한하여 인가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인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과 채무자 I, K, 호주국인 L에 대한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하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결정 중 제1-2호, 제1-6

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부분과 채무자 I, K, 호주국인 L에 대한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위 각 부분을 취소하며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고, 채무자 E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고 및 채무자 F, G, H, J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0. 29.

판사 홍동기(재판장) 이봉민 이인수

별 지

별지 1

주주총회의 표시

- 일시: 2025. 1. 23.(목) 오전 9:00
- 장소: 서울 용산구 Z 1층 AA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끝.

각주1: Corporations Act 2001 SECTION 1070A - Nature of shares and certain other interests in a company or registered scheme (1) A share, other interest of a member in a company or interest of a person in a registered scheme: (a) is personal property; and (b) is transferable or transmissible as provided by: (i) the company's, or scheme's, constitution; or (ii) the operating rules of a prescribed CS facility if they are applicable; and (c) is capable of devolution by will or by operation of law

각주2: Corporations Act 2001 SECTION 1071F - Remedy for refusal to register transfer or transmission (2) If the Court is satisfied on the application that the refusal or failure was without just cause, the Court may: (a) order that the transfer or transmission be registered; or (b) make such other order as it thinks just and reasonable, including: (i) in the case of a transfer or transmission of shares—an order providing for the purchase of the shares by a specified member of the company or by the company; and (ii) in the case of a purchase by the company—an order providing for the reduction accordingly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